

보도	2026.5.20.(수) 조간	배포	2026.5.19.(화)
담당부서	소비자소통국 손해보험민원팀	책임자	팀 장 최은희 (02-3145-5775)
		담당자	수 석 조성민 (02-3145-5770)

##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'실손의료보험' 관련 유의사항

### < 주 요 내 용 >

- 우리원은 소비자가 금융 거래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주요 민원 사례와 더불어 안내하고 있는바,
- 금번에는 **실손의료보험**(이하 '실손보험')과 관련하여 **단체실손보험 가입, 실손보험 전환,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** 등 최근 빈발하는 주요 민원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

### [ 소비자 유의사항 ]

- ① **단체실손보험**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**개인실손보험**의 **보험료 납입을 중지** 할 수 있습니다.
- ② 퇴직 등으로 인해 **단체실손보험**이 종료되었다면, 기존에 중지했던 **개인실손보험**을 **1개월 이내**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.
- ③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**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**으로 **전환**하였다더라도 **최대 6개월 이내**에 전환 신청을 **철회**하여 **이전 계약**으로 **원복**할 수 있습니다.
- ④ **국내실손보험**에 가입되어 있다면 **해외여행실손보험** **국내 의료비 특약**에 가입하더라도 **국내 의료비**는 **중복 보상** 받을 수 없습니다.

#### [ 단체 실손보험 ]

- ☑ 기존에 가입한 **개인실손보험** **납입중지** 가능
- ☑ 종료 후 **1개월 이내**에 **개인실손보험** 재개 가능

#### [ 전환형실손보험 ]

- ☑ 전환청약 후 **최대 6개월 이내**에 **철회** 가능

#### [ 해외여행 실손보험 ]

- ☑ **국내 의료비** **중복 보상 불가**

1

단체실손보험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
### 주요 민원사례

◆ A씨는 입사 이후 직장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나, 납입중지 제도를 설명받지 못해 보험료를 이중 납입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해달라는 민원 제기

□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,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- **(대상)** 개인실손보험(가입 후 1년 경과)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
- **(운영)** 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하며, 단체·개인 실손보험간 중복\*되는 보장종목(상해·질병입원 등)만 중지 가능\*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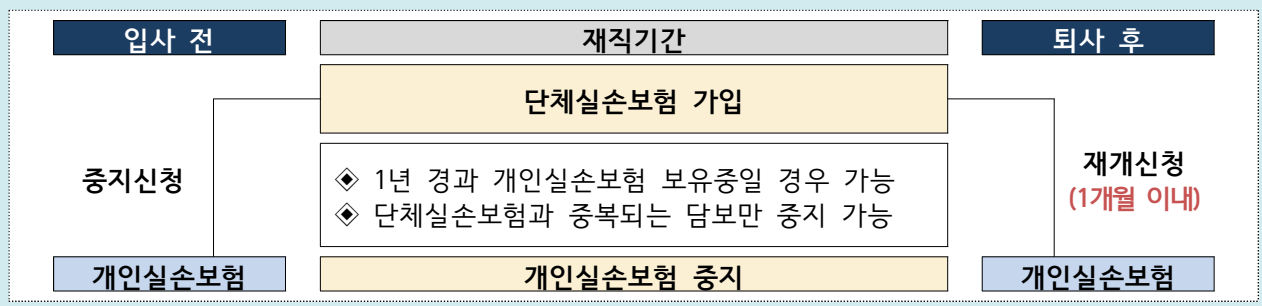
\*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의 상품구조 차이로 중복되는 보장종목이 불일치할 경우,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중지 가능

(예) 개인 : '종합'(상해+질병) 입원 - 단체 : '상해' 입원 → 개인 '종합'입원담보 중지可

\*\* 중지신청을 하였더라도 15일 이내에 중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중지 전 계약으로 복원

※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([www.credit4u.or.kr](http://www.credit4u.or.kr)) 또는 생·손보험회 내보험찾아줌([www.cont.insure.or.kr](http://www.cont.insure.or.kr), [www.cont.knia.or.kr](http://www.cont.knia.or.kr))을 통해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☑ 개인실손보험 및 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경우 보장종목 등을 비교하여 중복 가입을 해소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

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었다면,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.

### 주요 민원사례

- ◇ B씨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단체실손보험만 유지하던 중 '25.12.31. 일자로 퇴사하게 되어 보장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개인실손보험 가입을 문의하였으나, 뇌질환 진단 및 수술보험금 청구이력으로 가입이 거절되었음
- 뒤늦게 중지하였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억나 '26.3.21. 일자에 재개를 요청하였으나,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여 불가하자 민원 제기

□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었다면 1개월 이내\*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.

\* 소비자가 고의적으로 無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 발생 시에 개인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설정

- **(무심사 재개)** 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가입 심사를 받지 않고 개인실손보험 재개 가능
- **(재개 상품)** 기존 중지시점의 상품 또는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·보유중인 상품\* 중 계약자가 선택

\* 해당시점에 판매·보유중인 상품으로 재개할 경우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음

※ 개인실손보험 중지신청시 '중지신청서' 등을 통해 상기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, **꼼꼼하게 확인**하고 서명할 필요

☑ 실손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
#### 【참고】 개인실손보험 재개가 불가능한 경우

- ① 특약으로 부가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이후에 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
- ②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재개를 신청한 경우
- ③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회당 1개월을 초과하거나 누적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3

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였다더라도 최대 6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 철회하여 이전 계약으로 원복할 수 있습니다.

### 주요 민원사례

- ◆ C씨는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어 비교적 저렴하다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뒤 공제금액이 크고 보장내용이 적어 기존 보험으로 환원을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불수용되어 민원 제기
- ◆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D씨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실손보험으로 환원을 요청하였으나 그 사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불수용되었다는 민원 제기

□ 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(現5세대 실손보험<sup>(26.5.6. 판매중)</sup>)으로 계약전환을 청약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으로 환원\*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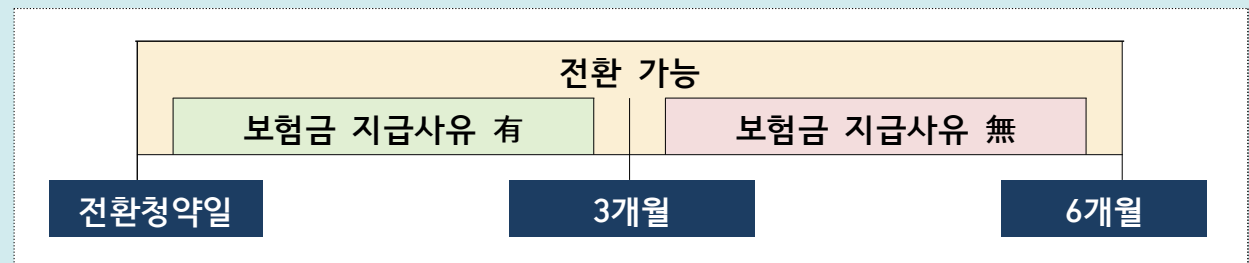
\*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함

○ 그 사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도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전환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환 계약 및 기존 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,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으로 보장하여 드립니다.

※ 전환 신청 철회시, 향후 전환이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

☑ 전환 청약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, 3개월 경과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전환 철회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.



4

국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외여행실손보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.

### 주요 민원사례

◆ E씨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후 여행하던 중 손가락 골절로 인해 해외병원 및 국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국내 의료비를 청구하였으나,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

□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담보는 해외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합니다.

○ 다만,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\*될 수 있으므로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\*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

(예) 의료비 15만원 발생 → 해외여행자보험 + 국내실손보험 = 총 15만원 한도의 보험금만 지급

☑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시 **국내 의료비 특약이 비례보상**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.